

제 호

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

성 명 :

생년월일 :

주 소 :

명 칭 :

소재지 :

「축산법」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
시장·군수·자치구청장

직인